필독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2024.01.04

목차

Ⅰ. 연말정산 개요

Ⅱ. 연말정산 서류 확인하기

Ⅲ. 소득공제 확인하기

Ⅳ. 세액공제 확인하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 제출 관련 당부의 말씀

임직원 여러분께 2023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한 다음의 서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임직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임직원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임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유의 해야할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항목	부당공제 사례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 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Ⅰ.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이란?
- 원천징수란?
- 연말정산 서류 제출
-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

원천징수로 낸 세금

최종 부담해야할 세금

근로자 → 회사 → 국세청

Ⅰ. 연말정산 개요

■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부터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함

매월 급여지급時 간이세액표 등에 따른 원천징수 함

<간이세액표>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1,870	1,880	18,450	15,070	7,280	3,900	53
1,880	1,890	18,660	15,280	7,480	4,110	73
1,890	1,900	18,930	15,490	7,690	4,310	94
1,900	1,910	19,260	15,700	7,890	4,520	1,14
1,910	1,920	19,590	15,910	8,090	4,720	1,34
1,920	1,930	19,920	16,120	8,300	4,920	1,55
1,930	1,940	20,240	16,330	8,50	5,13	1,75
1,940	1,950	20,570	16,540	8,7	5,330	1,96
1,950	1,960	20,900	16,750	8,910	40	2,16
1,960	1,970	21,230	16,970	9,110	40	2,36
1,970	1,980	21,550	17,180	9,3	0	2,57
1,980	1,990	21,880	17,390	20	6,1	2,77
1,990	2,000	22,210	17,600	9,730	6,3	2,98
2,000	2,010	22,540	17,8	9,930	6,5	3,18

1월 급여
기본 급여 : 000
각종 수당 000
소득세 : XXX
지급 총액 : $$$

2월 급여
기본 급여 : 000
각종 수당 000
소득세 : XXX
지급 총액 : $$$

••••

12월 급여
기본 급여 : 000
각종 수당 000
소득세 : XXX
지급 총액 : $$$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급여지급 時 원천징수 함

간이세액표에 따른 합계액 (Σ1월 소득세~12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기납부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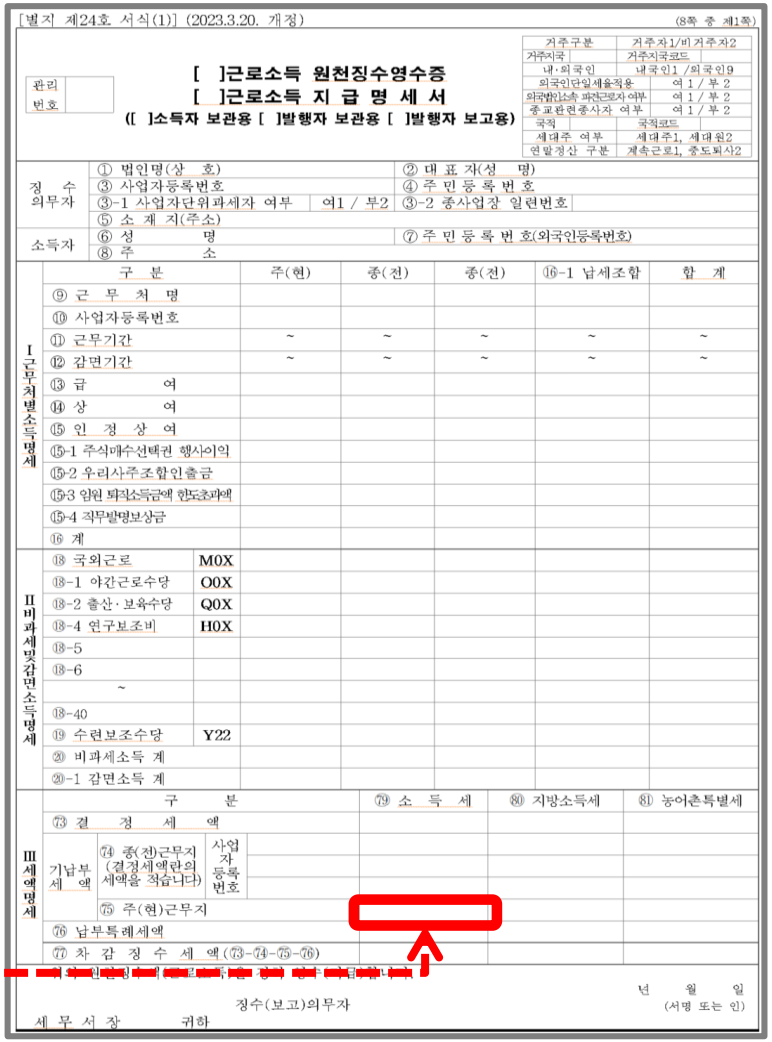
[별지 제24호 서식(1)] (2023.3.20. 개정) (8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⑯-1 납세조합	합 계
Ⅰ 근무처별소득명세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Ⅱ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⑱ 국외근로	M0X					
	⑱-1 야간근로수당	O0X					
	⑱-2 출산·보육수당	Q0X					
	⑱-4 연구보조비	H0X					
	⑱-5						
	⑱-6						
	~						
	⑱-40						
	⑲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구 분		㉙ 소 득 세	㉚ 지방소득세	㉛ 농어촌특별세
Ⅲ 세액명세	㉓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㉔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납부세액 ㉕ 주(현)근무지				
	㉖ 납부특례세액				
	㉗ 차 감 징 수 세 액(㉓-㉔-㉕-㉖)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연말정산 서류 제출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출력(또는 PDF 파일)하여, 직접 수집한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
(회사) 서류검토 → 세액계산 → 지급명세서 작성 · 제출

※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출력물 또는 PDF 파일)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결정세액 계산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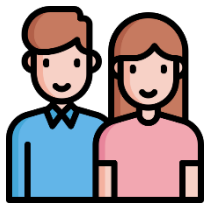

근로자

급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

회사

ⓐ간이세액 납부액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x)세 율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 ≤ ⓑ : 추가징수

ⓐ ≥ ⓑ : 환급

■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총급여 확인하기

<근로제공으로 받은 모든 대가>

과세제외

(경조금,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대상

(야간근로수당,자녀보육수당…)
: 기재대상

총급여

<과세대상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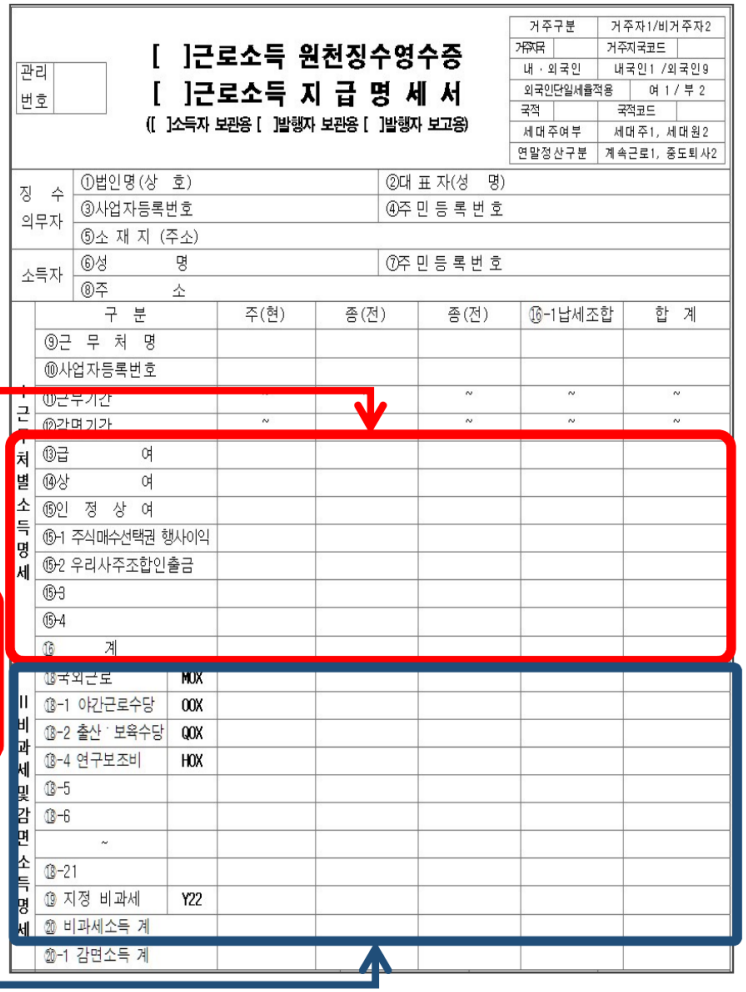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⑯-1납세조합	합 계
I 근무처별소득명세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⑫감면기간	~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⑯ 계					
II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⑱국외근로 MOX					
	⑱-1 야간근로수당 OOX					
	⑱-2 출산·보육수당 QOX					
	⑱-4 연구보조비 HOX					
	⑱-5					
	⑱-6					
	~					
	⑱-21					
	⑱ 지정 비과세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용한 금액 일부를 본인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	산출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빼주는 것
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자금, 연금/건강/고용보험…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보험료, 기부금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Ⅰ.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연말 정산 시기에 정확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함

근로제공으로 받은 총소득(총급여)
(-)근로소득 과세제외

=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성격)

=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포함)
(-) 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등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 15%, 24%, 35%,38%,40%, 42%, 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등)

= ⓑ결정세액

Ⅲ 세액명세	구 분	⑲ 소 득 세	⑳ 지방소득세	㉑ 농어촌특별세
	⑫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⑬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⑭ 주(현)근무지			
	⑮ 납부특례세액			
	⑯ 차 감 징 수 세 액(⑫-⑬-⑭-⑮)			

(8쪽 중 제2쪽)

Ⅳ 정산명세				
	㉑ 총급여(⑯,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㉒ 근로소득공제			
	㉓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㉔ 본 인		
		㉕ 배 우 자		
		㉖ 부 양 가 족(명)		
	추가공제	㉗ 경 로 우 대(명)		
		㉘ 장 애 인(명)		
		㉙ 부 녀 자		
		㉚ 한 부 모 가 족		
	연금보험료공제	㉛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 군인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특별소득공제	㉝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공제금액	
		㉯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㉞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밖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밖의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㉟ 기부금(이월분)		
		㊱ 계		
	㊲ 차 감 소 득 금 액			
그밖의 소득공제	㊳ 개인연금저축			
	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㊵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㊶ 투자조합출자 등			
	㊷ 신용카드등 사용액			
	㊸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㊹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㊺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㊻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㊼ 그밖의 소득공제 계			
	㊽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㊾ 종합소득 과세표준		
	㊿ 산출세액		
세액감면	(51) 「소득세법」		
	(52) 「조세특례제한법」(53 제외)		
	(5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4) 조세조약		
	(55) 세 액 감 면 계		
세액공제	(56) 근로소득		
	(57)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출산·입양자 (명)	
	연금계좌 (5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0)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0-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납입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61)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2)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3)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4)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5) 계		
	(66) 표준세액공제		
	(67) 납세조합공제		
	(68) 주택차입금		
	(69) 외국납부		
	(70)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71) 세액감면·세액공제 계		
	(72) 결 정 세 액(50-55-71)		
	(73) 산출세액(72)-(70)≥0		

Ⅱ. 연말정산 서류 확인하기

- 연말정산 제출서류(요약)
- 연말정산 제출서류(상세)
- 소득공제 신청서 금액확인하기
- 중도입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기
- 개인서명 확인하기

Ⅱ. 연말정산 서류 확인하기

■ 연말정산 제출서류(요약)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전체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본인작성
신용카드 등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작성
의료비 공제	의료비 지급명세서	본인작성
기부금 공제	기부금 명세서	본인작성
개인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납인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또는 본인보관/간소화
주택자금 공제	월세액·거주자간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 세액공제명세서	본인작성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 등본	
종교 기부금 공제	기부금 영수증,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인적공제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미제출
'23년 중도입사자	주민등록등본,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및 기부금 명세서 제출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전체	1) 국세청 자료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으로 진행 → 제출 없음 2) 그 외 기타 공제 자료(영수증 등)만 제출	

※ 모든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이 안되는 경우만 별도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상세)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적공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면·동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 모든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이 안되는 경우만 별도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상세)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주택자금	금융회사 등 차입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 차입금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http://www.iros.go.kr/),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 모든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이 안되는 경우만 별도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상세)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 모든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이 안되는 경우만 별도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상세)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의료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국세청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산후조리원비용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보험회사 등	국세청

※ 모든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이 안되는 경우만 별도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상세)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본인 작성**	
	취학전아동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병의원, 약국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구입처	국세청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병의원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요양기관	국세청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등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국세청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 모든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이 안되는 경우만 별도 제출합니다.

Ⅱ. 연말정산 서류 확인하기

■ 소득공제 신청서 금액확인하기

→ 증빙자료(기타)와 금액이 같은지 비교 !!!

[별지 제37호 서식(1)] (2023.3.20. 개정)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2021년		2022년			
						1~6월	7~12월	전체	전통시장	전체	전통시장		
국세청 계													

V. 세액감면 및 공제		종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공 제 종 류		명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계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의료비 – 난임시술비	지출액
			의료비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의료비 – 그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교육비 –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교육비 – 초·중·고등학교(명)	공납금
			교육비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교육비 –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교육비 계	
			기부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기부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기부 –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기부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Ⅱ. 연말정산 서류 확인하기

■ 중도입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기

✔ '23년 입사자 중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자 - 직인필수

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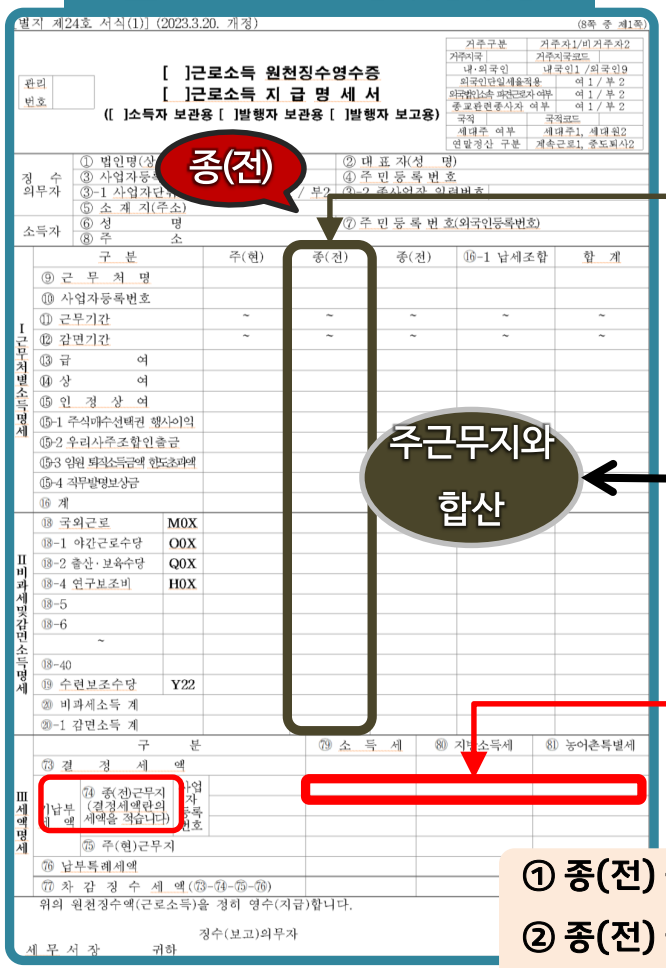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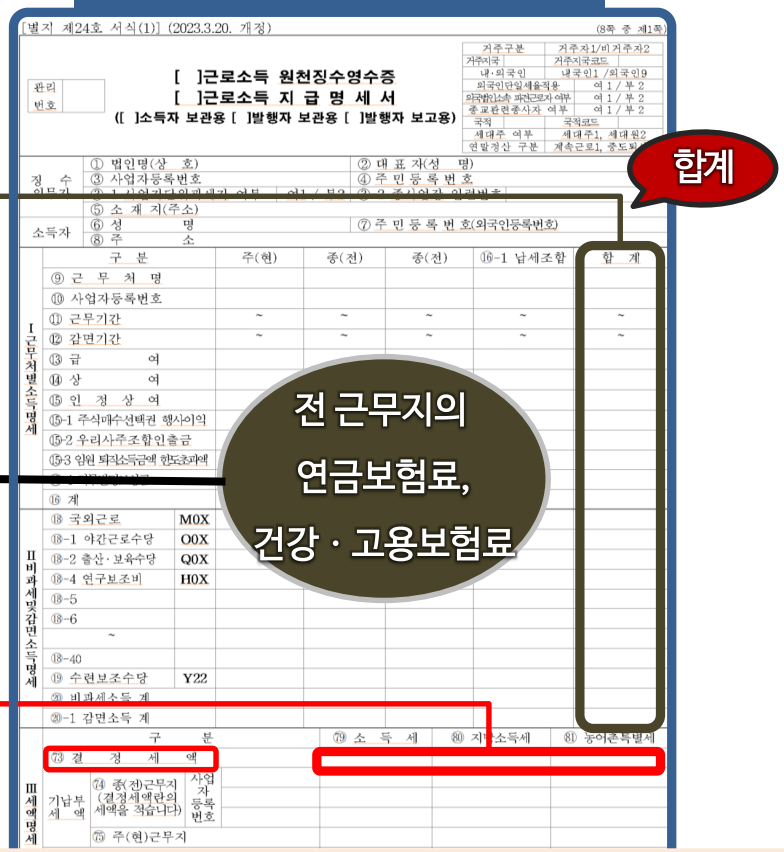

① 종(전) 근무지 정보 반드시 등록

② 종(전) 급여 총액, 종(전) 결정세액 확인 (기납부세액X, 차감징수세액 ×)

③ 주민등록등복,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제출

■ 개인서명 확인하기

→ 소득공제신청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김철수**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반드시 개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Ⅲ. 소득공제 확인하기

- 소득공제 범위
- 인적공제
- 소득공제 신청서 금액확인하기
- 개인서명 확인하기

■ 소득공제 범위

구 분				공제 가능한 지출 기간
종합 소득 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 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1.~12.31.
		공적연금보험료공제		1.1.~12.31.
	특별 소득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무월
		주택 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근무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근무월
		기부금(이월분)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1.~12.3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1.1.~12.3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무월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 투자		1.1.~12.31.
		이외 투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무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근무월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근무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1.~12.31.

■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항목 확인하기

구 분		공제대상자의 범위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근로자 본인	1인당 연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한 아래의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20세 이하)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미혼·이혼·사별 등)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 성 세대주	연 50만원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2 기본공제 요건 확인하기

기본공제 요건 검토

<table>
<tr><th colspan="2">가족요건</th><th>관계코드</th><th>나이요건
(장애인은 불문)</th><th>생계요건</th><th>소득금액요건</th></tr>
<tr><td colspan="2">소득자 본인</td><td>0</td><td>없음</td><td rowspan="4">없음</td><td>없음</td></tr>
<tr><td colspan="2">배우자</td><td>3</td><td>없음</td><td rowspan="7">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td></tr>
<tr><td colspan="2">직계비속(자녀·입양자)</td><td>4</td><td>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td></tr>
<tr><td colspan="2">장애인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의 장애인배우자</td><td>5</td><td>없음</td></tr>
<tr><td rowspan="2">직계
존속</td><td>본인직계존속</td><td>1</td><td rowspan="2">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td><td rowspan="2">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 일시 퇴거 인정)</td></tr>
<tr><td>배우자
직계존속</td><td>2</td></tr>
<tr><td colspan="2">형제자매</td><td>6</td><td>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td><td rowspan="2">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단,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도 허용)</td></tr>
<tr><td colspan="2">기초수급자</td><td>7</td><td>없음</td></tr>
<tr><td colspan="2">위탁아동</td><td>8</td><td>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td><td>-</td></tr>
</table>

2 기본공제 요건 확인하기

Check List_기본공제 대상자 유무 확인하기

[별지 제37호 서식(1)] (2023.3.20. 개정)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2021년		2022년		
						1~6월	7~12월	전체	전통시장	전체	전통시장	
국세청 계												

인적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0	홍길수		○			
1	(근로자 본인)					
4	홍길동		○			
1	120130-1234567					
	-					

기본공제 ○ 이면, 기본공제 대상임

2 기본공제 요건 확인하기

가족요건 검토

1 가족관계인지 확인

2 주민등록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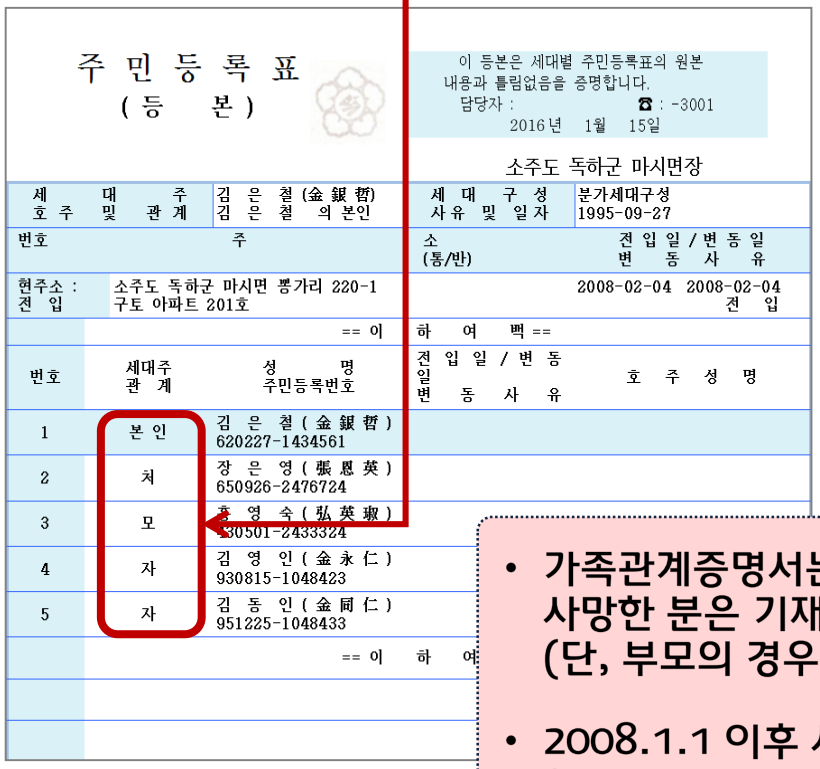

주 민 등 록 표
(등 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 ☎ : -3001
2016년 1월 15일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장

세대주 호주 및 관계	김 은 철 (金 銀 哲) 김 은 철 의 본인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분가세대구성 1995-09-27
번호	주	소 (통/반)	전입일 / 변동일 변동사유
현주소 : 전입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도 아파트 201호		2008-02-04 2008-02-04 전입

== 이 하 여 백 ==

번호	세대주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 변동사유	호주성명
1	본인	김 은 철 (金 銀 哲) 620227-1434561		
2	처	장 은 영 (張 恩 英) 650926-2476724		
3	모	홍 영 숙 (弘 英 淑) 930501-2433324		
4	자	김 영 인 (金 永 仁) 930815-1048423		
5	자	김 동 인 (金 同 仁) 951225-1048433		

== 이 하 여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은철(金 銀 哲)	1962년 2월 27일	620227-1434561	남	金海

가족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강호(金江浩)	1940년 1월 9일	401009-1467513	남	金海
모	이명자(李明子)				
배우자	장은영(張恩英)	1965년 9월 26일	650926-2476724	여	仁同

-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사망한 분은 기재되지 않음
  (단, 부모의 경우 성명만 기재되고 주민번호와 생년월일 등은 기재되지 않음)
- 2008.1.1 이후 사망한 분은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이 다 기재되고 성명 옆에 네모칸 안에 사망이라고 기재됨

Ⅲ. 소득공제 확인하기

2 기본공제 요건 확인하기

생계요건 검토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지가 주요쟁점 !

1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 (동거, 경제적 지원 등)

2 일시퇴거자 요건인지 확인

주 민 등 록 표
(등 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 ☎ : -3001
2016 년 1월 15일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장

세대주 호주 및 관계	김 은 철 (金 銀 哲) 김 은 철 의 본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분가세대구성 1995-09-27

번호	주소 (통/반)	전입일 / 변동일 변동사유
현주소 : 전입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토 아파트 201호	2008-02-04 2008-02-04 전입

== 이 하 여 백 ==

번호	세대주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 변동사유	호주성명
1	본인	김 은 철 (金 銀 哲) 620227-1434561		
2	처	장 은 영 (張 恩 英) 650926-2476724		
3	모	홍 영 숙 (弘 英 璹) 430501-2433324		
4	자	김 영 인 (金 永 仁) 930815-1048423		
5	자	김 동 인 (金 同 仁) 951225-1048433		

== 이 하 여 백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③주 소			
일시퇴거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일시퇴거지주소		⑦소득자와의 관계	
⑧퇴 거 사 유		⑨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14조 제2항에 따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재학증명서 1부 (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부 (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부 (재직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각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추가공제 요건 확인하기

추가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구 분	추가공제요건	추가공제금액
①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3.12.31 이전 출생자)	1명당 연 100만원
②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③ 부녀자 공제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 배우자가 있거나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자가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④ 한부모가족 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함.

추가공제 대상 판정시기

구 분	공제대상 판정시기
원칙(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일

3 추가공제 요건 확인하기

Check List_추가공제 대상자 유무 확인하기

[별지 제37호 서식(1)] (2023.3.20. 개정)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2021년		2022년					
						1~6월	7~12월	전체	전통시장	전체	전통시장				
국세청 계															

인적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0	홍길수		○			
1	(근로자 본인)					
4	홍길동		○		○	
1	120130-1234567					
	-					

기본공제 中

추가공제 ○ 이면, 추가공제 대상임

3 추가공제 요건 확인하기

추가공제 항목

(1) 경로우대자공제

① 공제대상 요건

공제대상 요건	공제금액	비 고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1953.12.31 이전 출생자

② 공제대상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
(연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③ 적용사례

㉠ 거주자 본인이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도 경로우대자 공제가능
㉡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경로우대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공제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자가 해당연도에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공제가능

3 추가공제 요건 확인하기

추가공제 항목

(2) 장애인공제

① 공제대상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
(연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일)

② 장애인 증명서류

구 분	코드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1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2	상이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국가보훈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보훈대상자확인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3 추가공제 요건 확인하기

추가공제 항목

(2) 장애인공제

③ 장애인의 범위

구 분	코드	제출서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1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2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상이자와 같은 정도 신체장애가 있는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보훈대상자확인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장애인증명서

인적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내 ·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0	김철수		○			
1	(근로자 본인)				○	
3	이영희		○			
1	650926-2476724					
2	김영숙					
1	430501 - 2433324					

-인적공제 명

3 추가공제 요건 확인하기

추가공제 항목

(2) 장애인공제

④ 장애인 유형별 증빙서류를 통한 장애인 판단 적용사례 : 적합한 장애인 증명서류

반드시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1급~7급의 상이를 입은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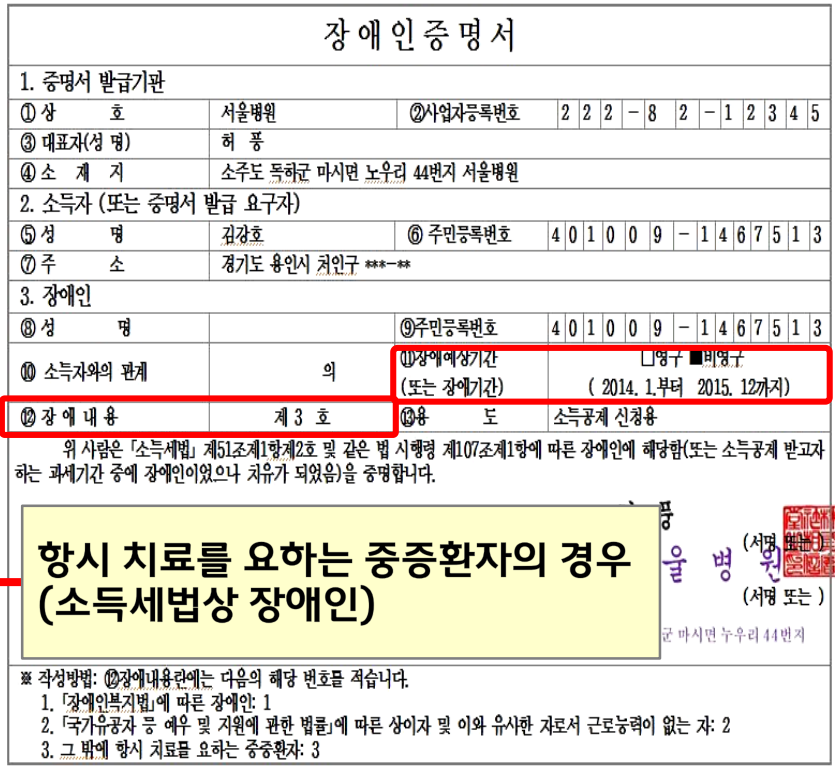

장애인증명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서울병원	②사업자등록번호	2 2 2 - 8 2 - 1 2 3 4 5
③ 대표자(성 명)	허 풍		
④ 소 재 지	소주도 동하군 마시면 노우리 44번지 서울병원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김강호	⑥ 주민등록번호	4 0 1 0 0 9 - 1 4 6 7 5 1 3
⑦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3. 장애인			
⑧ 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4 0 1 0 0 9 - 1 4 6 7 5 1 3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영구 ■비영구 (2014. 1.부터 2015. 12까지)
⑫ 장 애 내 용	제 3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서명 또는)

(서명 또는)

군 마시면 누우리 44번지

※ 작성방법: ⑫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

3 추가공제 요건 확인하기

추가공제 항목

(2) 장애인공제

⑤ 장애인 유형별 증빙서류를 통한 장애인 판단 적용사례 : 부적합한 장애인 증명서류

- 장애진단서, 중증진료등록확인증, 장기요양인정서 등은 장애인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진단서

진 단 대 상 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 · 검사결과 ·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재 판 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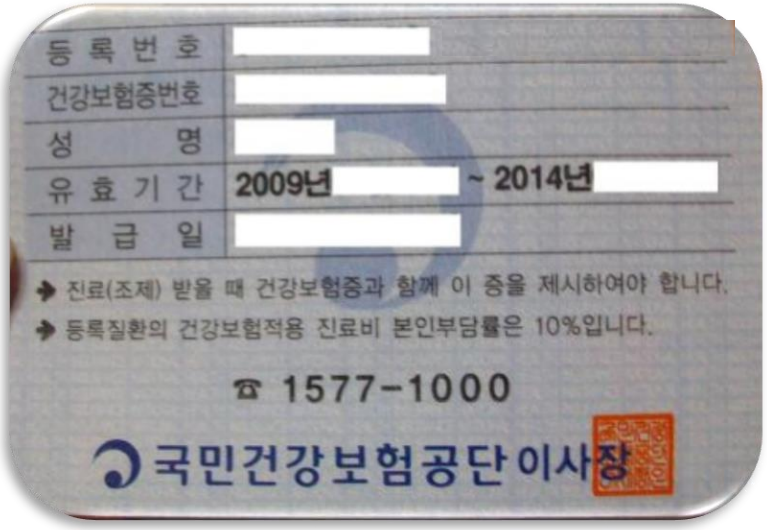

■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실업급여)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함.
근로자가 부담하는 5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본인부담분"을 보험료 공제함.

공제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대상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제공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 배우자명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 서면법규과-182, 2013.02.18)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 및 취득의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해주는 조세지원제도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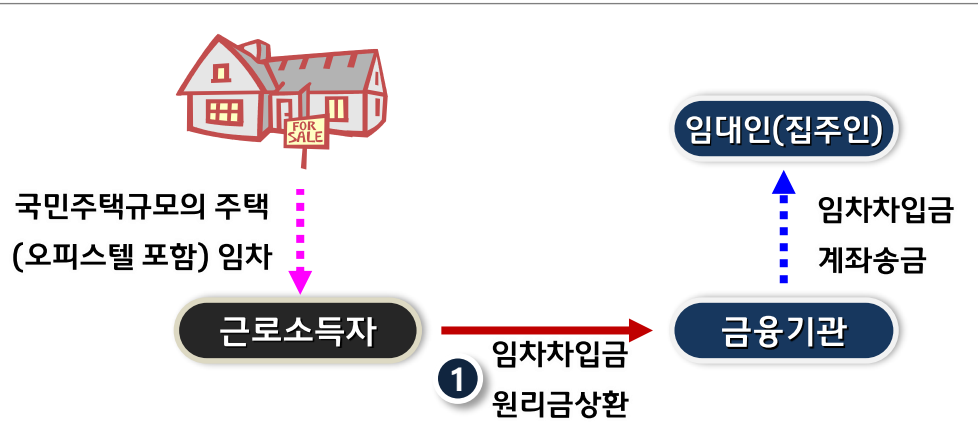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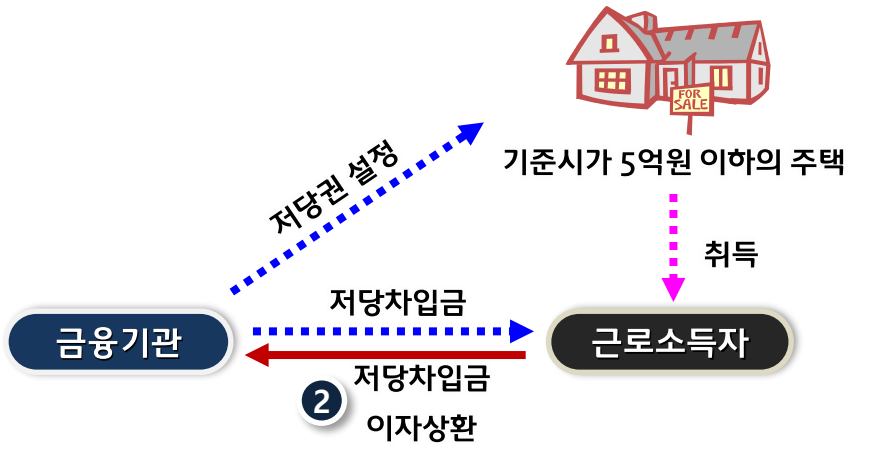

2 주택자금공제

(1)주요 용어 정리

① 세대와 세대주

✓ 세대구성원

- 근로자와 그 배우자
-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세대주 판정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

② 주택

✓ 『주택법』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 → 국민주택규모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 10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주택규모 제한없음)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보증금(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공제요건

구분	법 소정 대출기관 차입금	거주자 차입금 (대부업 등을 하지 않는 개인)
① 세대주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요건 없음	총급여 5천만원 이하
② 임차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③ 차입금 요건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이상일 것 (차입시기별 차입이자율 확인)

Ⅲ. 소득공제 확인하기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서류 검토

〈간소화서비스 자료〉

2023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김은철	820227-1******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 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주)우리은행	201-81-02***	1320200622215	2016-08-01	399,960
합 계				399,960

부 동 산 임 대 차 계 약 서

■ 전세 □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수주도 독하군 미시면 뽕가리 220-1 구토아파트 201호		
토 지	지 목	면 적	㎡
건 물	구 조 · 용 도	면 적	84 ㎡
임 대 할 부 분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임대료)	금 원정은 (□선불로, ■후불로) 매월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6년 7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년 7월 29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1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원칙) 근로자본인이 무주택세대주여야함
(예외)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것

2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일 것

3 1) 대출일이 전입일(입주일)과 3개월 이내일 것
2)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4 2023년도 상환한 금액일 것

주 민 등 록 표 [등 본]

이 등본은 세대원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 김감동 ☎ : 0501-564-8001
2017년 1월 15일

소주도 독하군 미시면장

세 대 주 호주 및 관계	김은철 [金銀哲] 김은철 의 본인	세 대 구 성 사유 및 일자	분가세대구성 1995-09-27
번호	주 소 [통 / 반]	전 입 일 / 변 동 일 변 동 사 유	
현주소	수주도 독하군 미시면 뽕가리 220-1 구토아파트 201호		2016-07-30 2016-07-30 전입

= 이 하 여 백 =

번호	세대주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변 동 사 유	호 주	성 명
1	본인	김은철 820227-1434581	[金銀哲]			
2	처	장은영 [illegible]	[張恩英]			
3	모	홍영숙 430501-2433324	[洪榮淑]			
4	자	김영인 930815-1043423	[金永仁]			
5	자	김동인 951225-1048433	[金同仁]			

= 이 하 여 백 =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Ⅲ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 대출				
				기타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공제요건

<1> 금융기관(법 소정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① 사례별 공제여부 판단예시

㉠ 계약자 및 채무자에 따른 소득공제적용여부

구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공제 적용 여·부
세대주	임차주택 계약자	임차차입금 채무자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
	부양가족	부양가족	×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
	부양가족	부양가족	×

㉡ 공제대상차입금의 유형

구분	지출시기에따른공제대상여부판단	
	'14.02.21. 이전	'14.02.21 이후
• 입주일 또는 전일입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	○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원리금상환액	×	○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거주자 차입은 1개월)이내에 차입한 자금원리금상환액	×	○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공제요건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① 세대주 요건 :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종·전근무지 포함)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신청 가능. 단, 세대원도 기타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③ 차입금 요건 : 근로자 본인이 채무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상일 것

16.03.16 ~ 17.03.09	17.03.10 ~18.03.20	18.03.21 ~19.03.19	19.03.20 ~ 20.03.12	20.03.13 ~ 2022.3.15	21.03.16 ~2023.3.19	23.03.20~
연 1.8% 이상	연 1.6% 이상	연 1.8% 이상	연 2.1% 이상	연 1.8% 이상	연 1.2% 이상	연 2.9% 이상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2)공제금액 및 한도

①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의 40%를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② 공제한도: 400만원

(3)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상기의 명세서 제출(법 소정 대출기관 차입시 제출하지 않음)

(4)제출 증빙서류

대출기관 차입금	개인간 차입금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원리금을 상환 입증서류(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2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보유세대로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구분		내용
공제대상자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세대원은 반드시 전입)
공제금액		▪이자상환액 전액
한 도		▪ 300만원 ~ 1,8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한도 적용)
지출기간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주요공제요건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의 구성원 및 외국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
	차입금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고정금리 & 비거치분할상환은 10년 이상) ▪ 소유권이전(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분일 것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2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공제요건

① 공제 대상자 명의 요건

구 분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 주택명의자와 차입금채무자 가 근로자 본인일 것
근로자 본인이 세대구성원인 경우	▪ 주택명의자와 차입금채무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를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 ※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는 모든 주택관련 공제 배제 ▪근로자 본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2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 차입금 요건

202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김은철	620227-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내역 (단위:원)

취급기간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일 / 차입금	상환기간 / 고정금리 차입금	주택취득일 /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저당권설정일 / 당해연도 원금상환액	연간 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 C 은행 (201-81-77***)	기존주택구입 (아파트론)	2008-02-24 2028-02-24 / 150,000,000	20년 / 150,000,000	2008-02-24 / 0	2008-02-24 / 0	9,766,219	9,766,219

1 상환기간이 15년(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분할 상환은 10년) 이상

2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3 근로자 = 차입금채무자 = 주택소유자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토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5268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2008년 2월 4일 제 77899호	2008년 2월 3일 매매	소유자 김은철 620227-14354586 소주도 독하군 누우면 뻔으리 401번지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토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8482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설정	2008년 2월 24일 제 67005호	2008년 2월 2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40,000,000 채무자 김은철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번지 근저당권자 한국 C은행 110121-0034211 (마시면지점)

Ⅲ. 소득공제 확인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3) Check List

<간소화서비스 자료>

202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김은철	620227-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간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일 / 차입금	상환기간 / 고정금리 차입금	주택 취득일 /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저당권 설정일 / 당해연도 원금상환액	연간 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 C 은행 (201-81-77***)	기존주택구입 (아파트론)	2008-02-24 2028-02-24 / 150,000,000	20년 / 150,000,000	2008-02-24 / 0	2008-02-24 / 0	9,766,219	9,766,219

▶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토아파트 201호

동 선택 동명없음 ▼ 다음 호 선택 201 ▼ 열람하기

공시기준일자	공동주택가격	전용면적(㎡)
2008. 6. 1 기준	280,000,000 원	80.36

1 차입자 및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연말 현재 세대주일것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실제 거주해야 함)

2 2013이전)저당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것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4~18)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 이후)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3 차입일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2000.10.31 이전 차입금은 3개월 요건이 없음)

4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대상금액을 구분하여 입력

(공제대상 차입금은 15년 이상, 2003.12.31 이전 또는 2015.1.1이후 차입금으로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건물등기부등본〉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토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5268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8년 02월 01일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80.3690㎡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토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5268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2008년 2월 4일 제 77899호	2008년 2월 3일 매매	소유자 김은철 620227-14354586 소주도 독하군 누우면 뻗으리 401번지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토아파트 201호 고유번호 1234-2008-008482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설정	2008년 2월 24일 제 67005호	2008년 2월 2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95,000,000 채무자 김은철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번지 근저당권자 한국 C은행 110121-0034211 (마시면지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Ⅲ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주택입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 거주자 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이상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 대출				
				기타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2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4) 주택요건 검토요령_주택가격기준

➢ 2019년 이후 차입금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차입 시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판단)

’19년 이후 차입	’14년 이후 차입	’13년 이전 차입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방문(www.kreic.org/realtyprice)

■ 그 밖의 소득공제

1 연금저축

(1) 개요

구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계좌명의자	• 소득자 본인
지출기간	• 해당 과세기간(1.1~12.31)
납입금액	• 전액 인정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공제한도	• 연 72만원(공제한도를 충족하는 연 납입액 180만원)

※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저축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함

(2) 제출서류

제출증빙서류	발급기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간소화서비스 자료	해당금융기관(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근로자가 작성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등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 적용대상자

➢근로소득자 본인과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입양자 포함)

공제대상기간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요건			
	가족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근로제공기간	○	○	무관	○

형제자매·기초수급자·위탁아동·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 공제대상 사용금액

구분	내용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제외 금액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 면세점 · 선박 · 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비용 처리된 금액 • 자동차 구입금액 · 리스료 · 자동차 렌트비 •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월세액 · 기부금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 국세, 지방세, 전기 · 수도 · 가스 ·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 상품권 구입금액 등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②+③+④+⑤-⑥+⑦)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1~3월 이용분 × 30%

▶ 4~12월 이용분 × 40%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1~3월 이용분 × 40%

▶ 4~12월 이용분 × 50%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8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 등 사용분 인 경우('23.1.1.~'23.3.31.)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 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4.1.~'23.12.31.) + 전통시장 사용분('23.1.1.~'23.3.31.)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1월~3월)}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1월~3월)} × 4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4.1.~'23.12.31.)+전통시장사용분('23.1.1.~'23.3.31.)<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총급여 7천 만 원 이하 자의 도 서·공 연 등 사용 분('23.4.1.~'23.12.31.) + 전 통 시 장 사용분('23.1.1.~'23.3.31.)+ 전통시장 사용분('23.4.1.~'23.12.31.)인 경우 :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1월~3월)}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4월~12월) + 전통시장 사용분('23.1월~3월)} ×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23.1월~3월)} × 5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23.1.1.~'23.3.31.)+ 총급여 7천 만 원 이하 자 의 도 서·공 연 등 사용 분('23.4.1.~'23.12.31.) + 전 통 시 장 사용분('23.1.1.~'23.3.31.)+ 전통시장 사용분('23.4.1.~'23.12.31.)인 경우 :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1월~3월)}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23.4월~12월) + 전통시장 사용분('23.1월~3월)} × 40% + {전통시장 사용분('23.4월~12월) × 5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7천만원이하자의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8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⑦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한도는 200만원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 Check List - 개정 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table>
<tr><th>구분</th><th>종 전</th><th>개 정</th></tr>
<tr><td>개정 내용</td><td>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 · 대상에 따라 차등적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공제율</th></tr>
<tr><td colspan="2">❶ 신용카드</td><td>15%</td></tr>
<tr><td colspan="2">❷ 직불 · 선불 · 현금영수증</td><td>30%</td></tr>
<tr><td colspan="2">❸ 도서 · 신문 · 공연 · 미술관 등*</td><td>30%</td></tr>
<tr><td colspan="2">❹ 전통시장</td><td>40%</td></tr>
<tr><td rowspan="2">❺ 대중교통</td><td>1~6월</td><td>40%</td></tr>
<tr><td>7~12월</td><td>80%</td></tr>
</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20%
-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20%
• (적용기한)’22.12.31
• (공제 한도) 급여수준별 200~300만원
- 일반공제한도 초과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 등 및 소비증가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td><td>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결제 수단 · 대상에 따라 차등적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공제율</th></tr>
<tr><td colspan="2">❶ 신용카드</td><td>15%</td></tr>
<tr><td colspan="2">❷ 직불 · 선불 · 현금영수증</td><td>30%</td></tr>
<tr><td rowspan="2">❸ 도서 · 신문 · 공연 · 미술관 등*</td><td>1~3월</td><td>30%</td></tr>
<tr><td>4~12월</td><td>40%</td></tr>
<tr><td rowspan="2">❹ 전통시장</td><td>1~3월</td><td>40%</td></tr>
<tr><td>4~12월</td><td>50%</td></tr>
<tr><td colspan="2">❺ 대중교통</td><td>80%</td></tr>
</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소비증가분 공제금액 과련 규정 삭제
• (적용기한)’25.12.31
• (공제 한도)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상 250만원
- 일반공제한도 초과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td></tr>
</table>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2015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구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자	계좌명의자	• 근로자 본인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 8,000만원 이하
지출(납입)	지출기간	•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월(휴직기간 포함) 지출분
	납입금액	• 전액 인정
공제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공제한도	• 240만원
제출서류		• 간소화 · 납입증명서
세부명세서 작성、제출		• 연금 · 저축 등 소득 · 세액공제명세서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구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저축 가입시기		~ 05.12.31	06.1.1 ~ 07.12.31	08.1.1 ~ 09.12.31	10.1.1 ~ 15.8.31	09.5.6 ~	~ 04.2.29
근로자	세대주 여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관
보유 주택	주택수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이하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보유주택 기준시가	무관	가입당시 3억원이하		무관		
지출	지출기간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월 기간 지출분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연 240만원 이하					월 15만원 이하 (연 180만원 이하)
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납입액 X 40%					
	공제한도	• 1차한도: 400만원 • 2차한도: Min[주택입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400만원] • 종합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한도(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된는 경우에만 종합한도 적용)					
제출서류		• 간소화자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통장사본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Ⅳ. 세액공제 확인하기

- **세액공제 범위**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요약**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Ⅳ. 세액공제 확인하기

1 세액공제 범위

세액공제		공제 가능한 지출 기간	이월공제 여부
근로소득			×
자 녀			×
연금계좌		1.1.~12.31.	×
특별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근무월	×
	의료비	근무월	×
	교육비	근무월	×
	정치자금기부금	1.1.~12.31.	×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1.1.~12.31.	○(10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1.~12.31.	×
	표준 세액공제		×
납세조합			×
주택자금이자		1.1.~12.31.	×
외국납부		1.1.~12.31.	○(10년)
월세액		근무월	×

2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개요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근로소득 세액공제</th></tr>
<tr><td colspan="2">공제대상자</td><td>• 모든 근로자</td></tr>
<tr><td rowspan="2">근로소득
세액공제액</td><td>세액공제액</td><td>•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만원+(130만원 초과금액) x 30%</td></tr>
<tr><td>한도액</td><td>
<table>
<tr><th>총급여액</th><th>한도액</th></tr>
<tr><td>~3,300만원</td><td>74만원</td></tr>
<tr><td>3,300만원~4,300만원</td><td>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X0.8%]</td></tr>
<tr><td>4,300만원~7,000만원</td><td>66만원</td></tr>
<tr><td>7,000만원~7,032만원</td><td>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X50%]</td></tr>
<tr><td>7,032만원~1억2,000만원</td><td>50만원</td></tr>
<tr><td>1억2,000만원~1억2,060만원</td><td>50만원-[(총급여액-1억2,000만원)X50%]</td></tr>
<tr><td>1억2,060만원 ~</td><td>20만원</td></tr>
</table>
</td></tr>
<tr><td colspan="2">세부명세서 작성·제출</td><td>• 제출하지 않음</td></tr>
</table>

3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확인하기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개요

구분	세부내용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8세(2015.12.31 이전 출생자) 이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세액공제액	➢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1명 이상 : 연 15만원 • 2명 이상 : 연 30만원 • 3명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해당 과세기간(2023.01.01~2023.12.31)에 출산、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은 경우 • 첫째: 연 30만원 • 둘째 :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 출산입양한 날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날짜부터 첫째로 입력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세부내용</th></tr>
<tr><td rowspan="3">공제대상</td><td>연금저축계좌</td><td>•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td></tr>
<tr><td rowspan="2">퇴직연금계좌</td><td>•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td></tr>
<tr><td>•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연금에 납입한 퇴직연금</td></tr>
<tr><td>공제대상
납입금액 한도</td><td colspan="2">전환금액 없는 경우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한도액</th></tr>
<tr><td>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td><td>900만원</td><td rowspan="3">합계 900만원</td></tr>
<tr><td>퇴직연금</td><td>900만원</td></tr>
<tr><td>연금저축</td><td>600만원</td></tr>
</table>
전환금액 있는 경우
전환금액 없는 경우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
Min(전환금액 X10%, 300만원)</td></tr>
<tr><td>공제율</td><td colspan="2">
<table>
<tr><th>총급여</th><th>공제율</th></tr>
<tr><td>5,500만원 이하</td><td>15%</td></tr>
<tr><td>5,500만원 초과</td><td>12%</td></tr>
</table></td></tr>
<tr><td>세액공제</td><td colspan="2">Min[Min[납입금액, 공제대상납입금액 한도] × 공제율, 순차한도*]
*순차한도: 세액공제 순서를 고려한 순차한도를 말함</td></tr>
<tr><td>공제순서</td><td colspan="2">• 과학기술인공제회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ISA계좌 전화금액 순서로 공제
• ISA 전화금액은 ISA 전환 퇴직연금 → ISA 전환 연금저축 순으로 공제</td></tr>
<tr><td>제출서류</td><td colspan="2">간소화·납입확인서</td></tr>
<tr><td>세부명세서 작성</td><td colspan="2">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td></tr>
</table>

5 특별 세액공제 요약

구 분		대 상	공제대상 금액한도	세액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생명·상해보험료 등)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험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료		15%
의료비	본인·만65세 이상자·장애인	• 시력보정용 안경·콘텐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한도) • 산후조리·요양의 대가로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이외 공제대상 의료비 전액 인정	한도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수강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	1명당 300만원	15%
	초·중·고등학생	• 등록금,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대학생	• 대학교·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수업료 등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 대학·대학원·시간제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한도없음	
	장애인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장애인 재활교육비		

5 특별 세액공제 요약

구 분			대 상	공제대상 금액한도	세액 공제율
기부금	정치 자금	10만원 이하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부	근로소득금액 전액	100/110
		10만원초과			15%(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	연 500만원	100/110
		10만원초과			15%
	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국가기관 등에 지출한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우리사주조합		• 비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Ⅳ. 세액공제 확인하기

■ 보험료 세액공제

Check List

〈간소화서비스 자료〉

202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김은철	620227-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 류	상 호 / 사업자번호	보험종류 /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보장성	△△생명보험 ㈜	내 탓이오 보험	620227-1*****	김은철	480,000
	104-81-11***	987654321***			
보장성	○○화재보험 ㈜	병원비 보험	650926-2*****	장은영	370,000
	116-81-09***	23456777***			
보장성	○○화재보험 ㈜	병원비 보험	930815-1*****	김영인	240,000
	116-81-09***	45678888***			
보장성	○○화재보험 ㈜	병원비 보험	951225-1*****	김동인	200,000
	116-81-09***	56789999***			
인별합계금액					1,290,000

1.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족,생계,나이, 소득금액요건)일 것
2.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족,생계,나이, 소득금액요건)일 것
3. 보험료 공제대상자로서 피보험자 기준으로 입력
4. 보험종류별로 구분 입력 (공제한도 연 100만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1)] (2023.3.20. 개정)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680,000								
								기타 계											
0	김은철			○				국세청			480,000								
1	(근로자 본인)							기타											
4	김동인			○				국세청			200,000								
	951225-1**							기타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680,000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680,000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 보험료 세액공제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사례)

202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김은철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보험료공제대상임
단,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중 1명만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도 공제가능함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 류	상 호 / 사업자번호	보험종류 /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		납입금액계
보장성	△△생명보험 ㈜	내 탓이오 보험	620227-1******	김은철	480,000
	104-81-11***	987654321***			
보장성	○○화재보험 ㈜	병원비 보험	650926-2******	장은영	370,000
	116-81-09***	23456777***			
보장성	○○화재보험 ㈜	병원비 보험	930815-1******	김영인	240,000
	116-81-09***	45678888***			
보장성	○○화재보험 ㈜	병원비 보험	951225-1******	김동인	200,000
	116-81-09***	56789999***			
인별합계금액					1,290,000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

➢의료비 총 지출액에서 총 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함

〈소득·세액공제신고서 -1쪽〉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항목에 해당하는 없습니다.						국세청계			680,000		292,180			
						기타 계								
김은철		○				국세청			480,000					
(근로자 본인)						기타								
김동인		○				국세청			200,000					
951225-1******						기타								
						국세청								
-						기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680,000	100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	
		보험료 계		680,000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292,180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그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292,18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25%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15% 또는 30% (2021년 20 22년의 경우 20% 또는 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그밖의 공제대상자

〈원천징수영수증〉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⑫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⑬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⑭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⑮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2015년 이후 기부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⑯ 계		
		⑰ 표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식

$$\text{Max}\left[\begin{array}{l} 0 \\ ⓐ+ⓑ+ⓒ\ \text{Min}[(ⓓ-\text{총급여}\times 3\%),\ 700\text{만원}] \end{array}\right.$$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text{Min}\left[\begin{array}{c} ⓐ \\ \text{공제대상금액} \end{array}\right]\times 30\% + \text{Min}\left[\begin{array}{c} \text{Max}(ⓐ,\ \text{공제대상금액})-ⓐ \\ ⓑ \end{array}\right]\times 20\% + \text{MAX}\left[\begin{array}{c} \text{공제대상금액}-ⓐ-ⓑ \\ 0 \end{array}\right]\times 20\%$$

■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증빙자료

구 분		제출서류	간소화	비고
공제 대상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	○	간소화 외 개별기관 자료는 지출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납입확인서		
	장기요양비용 지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의료비부담명세서		
	보청기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구입 영수증		지출처 인적사항 · 환자명 반드시 기재
	장애인보장구 구입 · 임차비용	구입 · 임차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처방전+구입영수증		
	산후조리 · 요양비용	지출 영수증		
의료비 차감액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내역서		없음

■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증빙자료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202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김은철	620227-1******

■ 의료비 지출 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납입금액 계
107-47-26666	우리****	100,000
124-90-77777	밝은***	50,000
117-90-88888	열린***	50,000
137-08-33333	신****	92,180
인별합계금액		292,180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1)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대 상	제출처
의료비 총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경우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 국세청(관할세무서장)

(2)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방법

▪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란

구 분	표시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	"O" 표시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X" 표시

▪ "지급처", "지급명세" 란

구 분	지급처			지급명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증빙코드	⑩ 건수	⑪ 금액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적지 않음	적지 않음	1	적지 않음	합계액 기재
상기 이외의 자료	기재	기재	해당 코드 기재	기재	기재

"⑫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해당하는 경우 "O" 표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X" 표시

"⑬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 "O" 표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X" 표시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Check List

〈간소화서비스 자료〉

202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김은철	620227-1******

■ 의료비 지출 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납입금액 계
107-47-26666	우리****	100,000
124-90-77777	밝은***	50,000
117-90-88888	열린***	50,000
137-08-33333	신****	92,180
인별합계금액		292,180

1 **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제한 없음)인가?

2 환자를 근로자 본인·만65세 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 이상와 와 기타 부양가족으로 구분하여 의료비지출액(산후조리원비용 1회당 200만원 이내 금액 포함, 실손의료보험금을 별도 기재함)을 구분 입력

3 **의료비지급명세서** 고려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여 기재하지 않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항목에 해당하는 없습니다.							국세청계			600,000		292,180			
							기타 계								
김은철		○					국세청			480,000					
(근로자 본인)							기타								
김동인		○					국세청			200,000					
951225-1******							기타								
							국세청								
-							기타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292,180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20%
	그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292,18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 )년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주민등록번호	⑥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상호	⑨의료증빙코드	⑩건수	⑪금액	⑫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6 2 0 2 2 7 - 1 2 3 4 5 6 7	○	- -		1		292,180	
		합 계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table>
<tr><th>구분</th><th>공제대상자</th><th colspan="2">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th></tr>
<tr><td rowspan="3">일반
교육비</td><td rowspan="2">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td><td>원칙</td><td>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td></tr>
<tr><td>예외
인정</td><td>
<table>
<tr><th>구분</th><th>학교 등에 지출</th><th>학교 외 지출</th></tr>
<tr><td>취학전 아동</td><td>• 급식비
• 방과후 과정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td><td></td></tr>
<tr><td>초·중·고</td><td>• 급식비
• 교과서대
•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연30만원 한도)
• 방과후 과정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td><td>• 교복(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td></tr>
</table>
</td></tr>
<tr><td>근로자
본인</td><td colspan="2">① 대학원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과정 교육비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 제외)
③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td></tr>
<tr><td>장애인
특수
교육비</td><td>장애인</td><td colspan="2">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아래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① 사회복지시설
② 보건복지부장권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td></tr>
</table>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table>
<tr><th>구분</th><th>공제대상자</th><th>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th></tr>
<tr><td rowspan="2">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세액</td><td>공제대상 금액</td><td><교육비 공제한도>
<table>
<tr><th>근로자본인</th><th>취학 전 아동, 유치원, 초·중·고등 학생</th><th>대학생</th><th>장애인특수교육비</th></tr>
<tr><td>전액공제</td><td>학생 1명당 연 300만원</td><td>학생 1명당 연 900만원</td><td>전액공제</td></tr>
</table></td></tr>
<tr><td>세액공제액</td><td>공제대상금액 × 15%</td></tr>
</table>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Check List

〈간소화서비스 자료〉

2023 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교육비]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김동인	971225-1******

■ 교육비 부담 내역 (단위: 원)

교육비 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납입금액 계
107-47-26666	***고등학교	109-82-04***	2,400,000
인별합계금액			2,400,000

1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일 것

2 공제대상 교육기관일 것

3 교육비 대상 금액 확인 및 입력 (장학금 등이 있는 경우 차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1)] (2023.3.20. 개정)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 공제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680,000							2,400,000	
							기타 계											
0	김동인		○				국세청			480,000								
1	(본인)						기타											
4	김동인 951225-1**		○				국세청			200,000							2,400,000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680,000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680,000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292,180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20%	
	그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292,18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1명)	공납금	2,400,000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2,400,000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11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25%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15%	

(Ctrl)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중 공제한도 기부금에 15%(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	세부내용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지급한 기부금	
공제금액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초과: 15%
	일반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한도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x 100% ② 고향사랑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x 100%(연간한도 500만원) ③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x 100%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x 100% ⑤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x 100% ⑥ 일반기부굼(종교단체 기부금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x 10% + Min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x 20% ; ⑤ 일반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제출서류</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제출서류</th></tr>
<tr><td rowspan="5">2023년 지출분</td><td>원 칙</td><td>기부금영수증 · 간소화</td></tr>
<tr><td>정치자금</td><td>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td></tr>
<tr><td>회사일괄징수기부금</td><td>제출서류 없음</td></tr>
<tr><td>종교단체 기부금</td><td>종교단체 입증서류 반드시 첨부(설립허가증 · 소속증명서)</td></tr>
<tr><td>특별재난지역자원봉사</td><td>자원봉사확인서(지자체장 발급)</td></tr>
<tr><td colspan="2">이월 기부금</td><td>2023년 기부금명세서</td></tr>
</table>
</td></tr>
</table>

Ⅳ. 세액공제 확인하기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Check List

〈영수증 자료〉

일련번호 2023-67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 명	김은철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220-1 구토아파트 201호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화업사 (박차세 주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500401-1987654
소 재 지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뽕가리 106-1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④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년 월	내 용	금 액
종교단체기부금	41	금전	2023 년 5월	후원금	76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1월 10일

신청인 김 은 철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기부금 수령인 박 치 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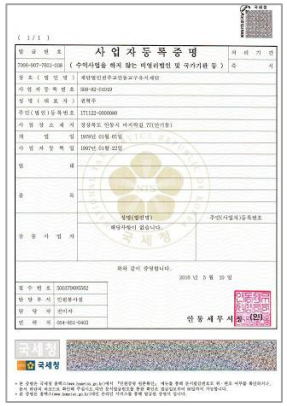

1 기부자가 거주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본인만 해당)

2 법령에 정한 기부금 단체일 것

3 해당 기부금 분류가 맞는지 확인할 것

4 2023년에 지출한 금액일것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그밖의 공제대상 실손의료보험금 계					
		의료비 계		292,180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1명)	공납금	2,400,000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2,400,000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25%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1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또는 30%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2021년 2022년의 경우 20% 또는 35%)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800,000		
		기부금 계			800,000		

〈기부금명세서〉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기부처				기부자			기부 명세				
							기부금액				
⑦ 코드	⑧ 기부내용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 제외 기부금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공제 제외 기부금 ⑲ 기타
20 41	금전	천주교재단	503-82-****		홍길동	801127-1******	1	800,000	800,000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공제제외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40,41	50
합 계	800,000				800,000			
본 인	800,000				800,000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❹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필요경비	해당 연도 공제금액 세액(소득)공제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이월금액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개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	세부내용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거주요건	반드시 전입되어 있어야 함(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 월세액 = $\frac{\text{임대차계약서상의 총 월세액}}{\text{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일수}}$ X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한도	750만원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개별 공동주택가격확인서(홈택스 조회) • 월세 지급 입증서률(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Ⅳ. 세액공제 확인하기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Check List

〈임대차계약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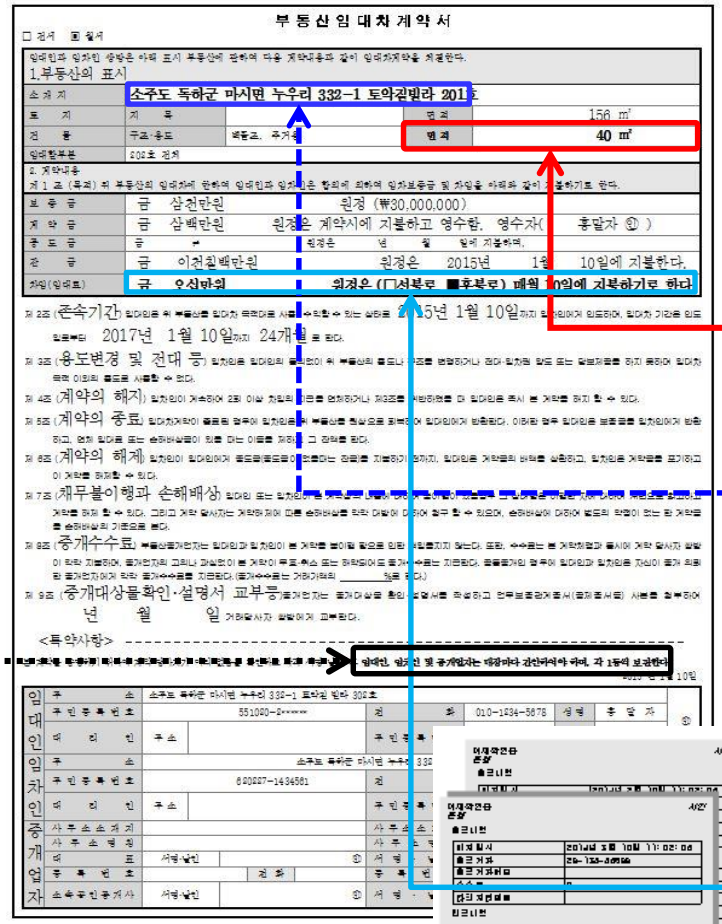

〈계좌이체 확인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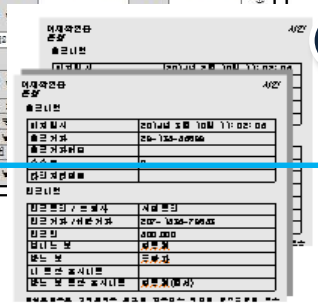

1. 임차인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일 것

(원칙)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것

(예외)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2.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것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일치할 것

4. 2023년의 월세 지출금액 입력

- 세법상의 월세액 계산법 반영 (1일 월세액 X 2023년 임차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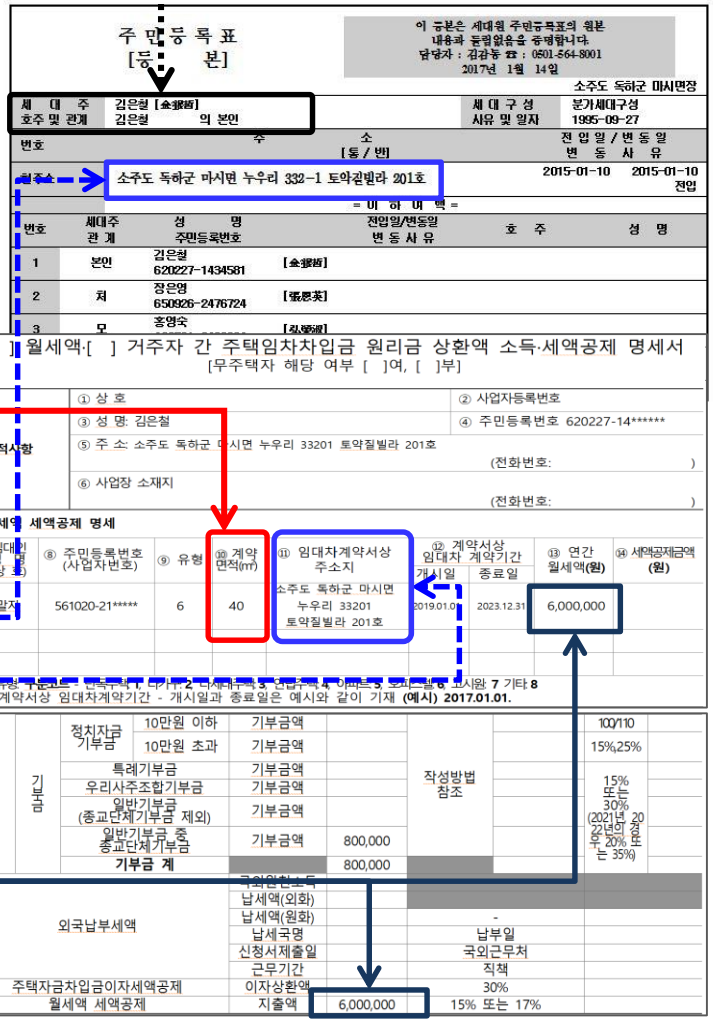

감사합니다.